

문경시의회 공고 제 2016-3호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인호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세입·세출의 출납 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까지로 조정되고 결산 대상이 변경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기존의 6월·7월에서 5월·6월로 개정된 현실을 고려하여, 제1차 정례회를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결산 업무의 적시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8일로 앞당기고 의회의 결산승인을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조정함(안 제4조제1항)
- 나. 종전의 제5조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과 회의별 심의안건에 관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조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심의안건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각각 제5조·제6조로 분리함(안 제5조, 안 제6조)
- 다. 그 밖에 모호한 단어와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불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문경시 중앙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1) 전자우편: pak517@korea.kr
 -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의”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연간 총회의일수)”를 “(연간 총 회의일수)”로 하고, 제2조 본문 중 “의회의”를 “문경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로, “회기를 합산하여 80일이내”를 “기간을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을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그 기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7월 5일”을 “6월 8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원총선거”를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이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로,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를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휴일인”을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으로, “정상근무일”을 “정상 근무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회기운영)”을 “(심의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문경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듣는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문경시의회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당해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②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의 승인과

하 "전국동시지방선거"라 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
정상 근무일--.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③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④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과약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문경시장에게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민의 의견 수렴·과약 및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문경시의회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문경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이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준용) -----

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회의규
칙」을 준용한다.

--- 등에 -----
-----에 따른
다.